

제 1757 호
1993. 7.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이 원 중
편집인 : 공 보 관 김 태 수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려

● 규 칙

제 2569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
제 2570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8
제 2571 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
제 2572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23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내일”

규 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1993. 7. 16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①

●서울특별시규칙제2569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제1호 중 라목을 삭제하
고, 동항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바. 시정여론 조사 및 시정반영

제3조제2항제1호 중 마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
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책회의 운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보건사회국·산
업경제국·민방위국”을 “보사환경국·가정복
지국·산업경제국·문화관광국·민방위국 및
청소사업본부”로 하고, 나목을 다목으로 하
며, 동호에 나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나. 대통령 공약사항에 관한 분석·확인
및 평가

라.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계획국·건
설관리국·환경녹지국·교통국·상하수국 및
소방본부”를 “도시계획국·주택국·도로국·교
통국·하수국·소방본부·종합건설본부·상수도
사업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다목 및 동항 제2호
중 라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투자심사제·공기업1차

및 공기업2제”를 “제정1제·제정2제 및 제
정3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투자관리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재정기획제

가.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총괄

나. 재정운용지침 수립

다. 기채관리

라. 차관도입 및 외채발행

마. 담당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정1제

가. 투자심사 총괄

나. 담당관이 지정하는 분야별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3. 재정2제

가. 투자기관 예산결산검토 총괄

나.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강남병
원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다. 공기업화 검토

라. 담당관이 지정하는 분야별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4. 재정3제

가. 투자기관 경영평가 총괄

나.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
리공사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다. 담당관이 지정하는 분야별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전산담당관”을 “전산통
계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산통계담당관 밑에 전산기획계·전산
관리계 및 통계계를 두고, 전산기획계장
및 전산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통계계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산담당관”을 “전산통계담당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전산화”를 각각 “시정 전산화”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전산요원 수급관리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산관리계

가. 행정전산망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평가

나. 구정 전산화 계획 조정 및 사업추진 평가

다. 구정 전산화 우선순위 및 타당성 검토

라. 전산교육

마. 전산이용기술 조사·연구 및 보급

3. 통계계

가.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통계기준의 설정 및 자료수집

다.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의 통제

라. 각종 통계보고의 작성 및 통제

마. 사회지표 작성

바.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사. 각종 조사통계의 계획 및 조정

아. 각종 조사통계의 조사·보고·집계 및 편찬

자. 조사원의 교육훈련

차. 위임통계의 조사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감사관) 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 밑에 감사총괄계·감사1계·감사2계·감사3계 및

감사4계를 두고, 감사총괄계장·감사1계장·감사2계장 및 감사3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4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총괄계

가. 감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산하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승인 및 지도

다. 감사원 감사의 수감준비, 지원 및 감사결과 처리

라.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징계요구

마. 관내 다른 담당관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사1계

가. 본청·4개 본부·사업소·소방행정기관·지방공사(공단)·시비(구비) 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와 결과의 처리(집행전달) 분석

나. 전산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주관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징계요구

3. 감사2계

가. 구청(동·보건소 포함)에 대한 감사와 결과의 처리(집행전달) 분석

나. 징계처분 공무원 소청 및 행정소송 사항 처리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징계요구

4. 감사3계

가. 일반감사 이외의 사정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주관

나. 산하기관 사정업무 추진사항 총괄 및 지도감독

다. 국무총리실·내무부 사정관련 사항
 라. 사정기획 및 평가실시 주관
 마.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징계요구

5. 감사4계
 가.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감정
 나. 기술분야 감사에 대한 지원 및 협
 조
 다. 감사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감
 사 및 징계요구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1계
 가. 조사담당관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나. 공직자 직무감찰
 다. 감사관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요구
 라. 담당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사2계
 가. 감사관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요구
 나. 의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조사처리 총괄
 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라. 보도사항(신문·TV·라디오 등) 중
 중요사항 조사처리 총괄

3. 환경순찰계
 가. 환경순찰 총괄
 나. 환경순찰업무의 지도감독
 다. 감사관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요구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민원담당관) ①민원담당관 밑에
 민원총괄계·민원처리1계 및 민원처리2계
 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민원담당관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총괄계
 가. 민원사항 조사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제
 나. 민원처리사항 종합분석 및 전산판
 리
 다. 진정의 접수 및 총괄관리
 라. 민원인 여론 수렴 및 분석
 마. 전화민원의 접수 및 총괄관리
 바. 감사관이 명하는 민원사항 조사처
 리 및 징계요구
 사. 담당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민원처리1계
 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나. 유관기관 민원 총괄 관리(대통령비
 서실,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중앙
 부처 등)
 다.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 처리총괄
 라. 지역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제
 청(한강 이북지역에 한함)

3. 민원처리2계
 가. 시민불편사항 조사개선
 나. 시정통신운영 및 전문사항 처리
 다. 이해결 민원 총괄관리
 라.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 처리(한강
 이남지역에 한함)
 다. 지역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제
 청(한강 이남지역)

제16조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
 다.

바. 시본청직원 채워 향상과 시운동부
 운영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2. 의견계

가. 서울시 의전에 관한 업무협의 조정 및 수행

나. 서울시 공직 방문인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각종 행사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가 주요 의전행사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국경일·법정기념일 등 정부행사의 지원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바.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행사 일정에 관한 사항

3. 차량계

가. 시유차량의 정수 관리

나. 시본청 차량정비 종합계획 수립

다. 차량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라. 시본청 차량유지관리(배차, 유류지급 등)

마. 시본청 운전원 관리

제18조제2항제1호 중 차목과 동항 제3호 중 나목 및 다목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민1과”를 “시민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중 차목과 카목을 각각 타목과 파목으로 하며,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차목과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민원사무처리지침·민원사무편람의 작성 및 유지관리

차.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 민원업무 총괄 및 민원제도 개선

카. 구창구 민원행정 지도감독

제19조제2항제2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제결혼신고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가목·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외수입원 발굴 및 연구

다. 해외수입(특별회계 제외) 정수 실적관리

라. 사용료·수수료 편람 발간

제22조제2항제5호가목 중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및 텔레비전시청료, 상하수도사용료”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산관리과) ①재산관리과에 재산총괄계·시유재산계·재산처분계 및 국유재산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재산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업회계로 처리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제외한다.

1. 재산총괄계

가. 공유재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관리의 총괄 및 조정

나. 공유재산의 취득·차입(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다. 국·공유재산 감정의 계획·연구 및 조정통제

라. 국·공유재산 감정의뢰 및 통보

마.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관내 다른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유재산계

가. 시유재산의 총괄

나. 시유재산의 지적정비 및 등기에 관한 사항

다. 용도폐지 시유재산의 인수

라. 은닉재산의 환수

마. 시유창고의 관리

3. 재산처분계

가. 잡종재산의 대부 및 처분

나. 잡종재산처분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이전

- 다.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
- 라. 체비지 매각 및 수납
- 마. 체비지 매각에 따른 민원(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등)처리

4. 국유재산계

- 가. 관리이관된 국유재산의 총괄
- 나. 관리이관된 국유재산의 지적정비 및 등기

- 다.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정
- 라. 용도폐지 국유재산의 인수
- 마. 은닉재산의 환수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적과) ①지적과에 토지관리계·토지조사계·지적1계 및 지적2계를 두고,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토지조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1계장 및 지적2계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지적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관리계

- 가. 토지행정의 기획 및 조정
- 나. 토지이동처리에 관한 사항
- 다. 외국인 토지관리
- 라.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사항
- 마.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 바.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토지조사계

- 가. 지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 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 라. 계약서 등 검인에 관한 사항
- 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운영

3. 지적1계

- 가.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 나. 측척변경 및 지적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

- 다. 지적기초점 관리
- 라. 지적도 정비 및 지적고시도면 협의
- 마.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바. 확정측량(면적측정 포함) 검사
- 사. 토지분할 허가 및 공유토지 분할업무 지도

4. 지적2계

- 가. 지적전산화 계획수립 및 집행
- 나. 지적전산실 운영 및 유지보수
- 다. 지적도 조제 및 재조제에 관한 사항

- 라.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지번변경에 관한 사항
- 바. 등본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사. 지적통계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제1호라목 중 “보건환경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하고, 동항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 중 “환경위생업소”를 “공중위생업소”로, 바목 중 “목욕장업소·수영장업소”를 “목욕장업소”로 하며, 동항 제5호 중 바목을 삭제한다.

다. 공중위생업무의 종합조정계획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약과) ①의약과에 의료기획계·의료관리계·약무계 및 가족보건계를 두고, 의료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료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약무계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가족보건계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의약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획계

- 가. 의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시립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다. 지방공사 병원의 지도·감독 및 조정

라. 보건소 육성 및 지도·감독

마.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바. 전공의 및 전문의에 관한 사항

사. 충무계획

아. 정신질환자·전염성질환자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 지도·감독

자. 의료관계법인 및 단체의 지도·감독

차. 시청부속의무실 관리 및 운영

카. 파내 다른 계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료관리계

가.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제외)의 육성 및 지도·감독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다. 안마사 및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

라. 의료유사업소(시술소) 및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에 관한 사항

마. 의료감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바.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피해 구제제도의 수립 개선

사. 병원적출물,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의료용구 판매업소 및 관세·면세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자. 혈액원 지도·감독

차.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약무계

가. 약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나. 약업소의 개설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

라. 의약품 품질관리

마. 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확인

바. 약사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사.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아. 약사 행정처분

자. 물수마약 관리

차. 마약중독자 치료 및 지정병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족보건계

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나.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다.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마.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사.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 재할용사업의 지도·감독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회과에 사회계·재활지원계·생활보호계·직장보험계 및 지역보험계를 두고, 각 계장은 치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의 “장애자복지계”를 “재활지원계”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장보험계

가.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인가 및 해산

나. 직장의료보험조합 예산·결산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지도

다. 직장의료보험조합 적용사업장 조사

라. 직장의료보험조합 직제 및 정원승인

마. 직장의료보험료 체납처분 승인

바.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사. 의료보호의 종합계획 및 조정

아. 의료보호기금의 운용

자.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및 취소

5. 지역보험계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가 및 해산

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결산의 승인

인 및 운영에 관한 지도

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제 및 정원승인

라. 지역의료보험료 체납처분 승인

마.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직종의료보험(청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환경과) ①환경과에 환경기획계·수질보전계·대기보전계 및 생활공해계를 두고, 환경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질보전계장 및 대기보전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활공해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및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환경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획계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 대시민홍보 및 교육

마.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에 관한 사항

사. 국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질보전계

가. 수질보전종합대책

나. 폐수배출 설치허가·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마. 청소사업본부 지도·감독

3. 대기보전계

가.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

나. 대기오염 배출시설허가·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다. 청정연료 공급지도

라. 연료사용규제에 관한 사항

4. 생활공해계

가. 생활공해(소음·진동·악취·분진) 종합대책 수립

나. 생활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공해방지대책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해 관련 민원충갈

마. 무허가 공해열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상공과) ①상공과에 지역경제계·상정계·중소기업계 및 품질관리계를 두고, 지역경제계장, 상정계장 및 중소기업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섬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상공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계

가.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추진

나. 지역경제동향 분석

다. 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라. 해외도시와 경제교류 협의 추진

마.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바. 수출진흥시책의 종합계획 및 조정

사. 수출산업 지도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아. 산업동원(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 소관)세부집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 산업동원 자원의 능력판단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차. 국내 다른 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상정계

가. 시장업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 지정연쇄화 사업자에 관한 사항

다. 도매센터·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 및 지도·감독

라. 주요생필품 비축 사업

마.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바. 제조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사. 유통구조의 개선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3. 중소기업계

가.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기금조성 관리

나.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판매장 운영

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상공동원업체 자원 관리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 및 지도·감독

바. 지역공장 육성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사. 공장등록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아. 아파트형공장 설립·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차. 공단관리 및 공업발전에 관한 사항

가. 광업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계

가. 한국공업규격(KS) 표시허가품 및 등급사정 상품의 사후 관리

나.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다. 계량법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제량

기점사 지도·감독

라. 품질관리 진흥·협력에 관한 사항

마. 상표도용 방지에 관한 사항

바. 공업시험소 지도·감독

제38조의2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정거래계

가. 상거래 질서확립 및 상도의 양양대책 수립과 조정

나. 가격표시제 확립에 관한 사항

다. 상품권등록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라. 할부 및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항

마. 수입품의 원산지표시 사후검사에 관한 사항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업무협조사항(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노정파) ①노정파에 노정계·직업안정계 및 직업훈련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노정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정계

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 지도·감독

다. 단체협약조정 및 중재요구

라. 기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마.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직업안정계

가. 직업안정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직업안내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노동시장 조사 및 분석

라. 취업알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마. 직업안정위원회 운영

바. 무허가직업소개행위 단속 기본계획
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계

가. 직업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직업훈련시설 지도·감독

다. 훈련분야의 개발 및 직업훈련 실적
평가

라. 훈련수료자 사후관리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연료과) ①연료과에 연료행정계·도
시가스계·가스관리계 및 열관리계를 두
고, 연료행정계장·도시가스계장 및 열관
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가스관리
계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연료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료행정계

가. 연료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연탄공장 지도·감독 및 연탄 유통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다. 연탄가스 위해방지 및 연탄 품질관
리

라. 석유대리점·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마.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저유시설 관리
지도

바. 비상시 동력차원 동원 및 자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2. 도시가스계

가. 도시가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나.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에 관한 사
항

라.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 지도·감독

마. 가스시설 시공업체 지도·감독

바. 액화천연가스사업 추진에 관한 사

항

3. 가스관리계

가. 가스안전관리의 종합계획 및 총괄
조정

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수급 중
합계획 수립

다. 액화석유가스용기 충전소 허가 및
지도·감독

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 지도·
감독

가. 고압가스 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바. 가스용품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업 지도·감독

사.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검사기관 지정 및 권한위탁에 관한
사항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지도·
감독

4. 열관리계

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지도

나.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지도·감독

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지도·
감독

라.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및 지도·감
독

마.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바.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

사. 전기공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

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 및 대상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자금지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농수산물유통과) ①농수산물유통과에 유통기획계·유통관리계·양곡관리계·농수산지지도계 및 가축위생계를 두고, 유통기획계장 및 양곡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통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수산지지도계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가축위생계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기획계

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계획 및 조정

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

다. 농수산물 직판시장 건립 추진

라. 거래제한 고시에 관한 사항

마. 주말 농어민시장,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바.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유통관리계

가.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및 조정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 및 중매인 관리

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농수산물 유통단속 및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기존 도매시장 정비 추진

바. 원산지 표시 및 전통식품에 관한 사항

사. 농수산물 포장, 규격화에 대한 계획 및 시행

아. 대여양곡의 관리 및 보관창고의 지정

자. 양곡상의 허가

차. 정부양곡의 보관, 관리 및 사고처리

카. 정부양곡의 수불과 결산, 방출과 매출, 보관료 확인에 관한 사항

타. 정부양곡의 수매 및 비축에 관한 사항

파. 산업동원자원의 조사관리 및 집행

3. 양곡관리계

가. 양곡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

나. 양곡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다. 정부관리양곡의 조작도급계약 체결 및 해약

라. 정부관리양곡의 가공과 포장용 가공품의 수급 관리

마. 양곡 부산물의 생산과 매도처분

바. 가공공장, 도정업, 지정공장의 허가 및 지도·감독

사. 양곡도정을 시험 및 양곡가공품 관리

아. 양곡의 시·도간 조작수송 및 시내 창고간의 조작운반과 조작비 확인

자. 작업증명

차. 산업동원자원(양곡가공 및 생산시설)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4. 농수산지지도계

가. 농·축·수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나. 농지개발조합, 농촌지도소 및 농업협동조합의 지도

다. 전작 및 담작에 관한 사항

라. 농·축·수산 자재의 수급 및 통계 조사

마. 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축산물의 수급 조절 및 축산물 도매시장 지도

사. 축산업·종축업·부화업·인공수정소의 허가·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아. 낙농지도 및 우유소비에 관한 사항
 자. 축산단체(지역축협 등) 지도육성 및 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가축위생계

가.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작업장 설치 허가 및 위생관리
 다. 동물약품 및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마. 우유 등급 판매에 관한 사항
 바. 부정축산물 단속
 사. 수의사 업무 및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중 “문화계”를 “문화행정계”로 하고,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사업계

가. 서울600년문화행사 총괄
 나. 서울600년대동계 사업추진(서울자연제, 역사향토제, 시민축제, 도시에술제)
 다. 서울600년 문화자원봉사단 운영
 라. 서울문화 경전 사업추진(우리 마당 작은 축제, “나도 예술가” 창작발표회, 기업문화전시회, 서울문화상품 품평회)
 마. 한민족 하나로 운동총괄
 바. 서울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서울문화행정, 서울문화기획연구, 서울문화예술정보자료실, 서울문화 사랑방)
 사. 시사편찬사업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아. 문화정책 및 전통문화예술 유산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제4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

다.

가. 유형문화재의 발굴·정비복원·지정·해제 등 관리 총괄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형(동산에 한함)·무형문화재의 조사·발굴·지정·해제 등 관리 총괄

마. 박물관 및 민속자료 관리

제45조제2항제1호 중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마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바목(종전의 마목) 중 “국제회의”를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록

제46조제1항 중 “국제교류계 및 협력지원계”를 “국제교류계·협력지원계 및 국제행사계”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행사계

가. 서울시민 세계시민 사업추진(좋은 세계 이웃되기, 편한도시 서울만들기, 서울 속의 세계인 교류 등)

나. 서울세계도시축전 행사(자매·우호 도시 축제, 서울·아시아·세계 심포지엄)

다. 국제도시행정 강화

제47조제2항제1호 중 다목을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설계획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계획1계

가. 도시계획시설 중 수도, 공공의 청사, 운동장, 종합의료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열공급 설비, 장례식장, 화장장, 도살장, 관망탑, 공동구의 계획수

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 관련 법규 업무

다.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설계획2계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도서관, 연구시설, 문화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의 계획수립 및 조정

3. 가로계획1계(한강 이북지역)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지하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하, 항만, 하수도, 하천, 우수지시설, 방수설비, 방화설비, 철도, 궤도, 석도, 폐차장, 자동차 및 중기점사시설,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 공항의 계획수립 및 조정과 사도 개설

4. 가로계획2계(한강 이남지역)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지하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하, 항만, 하수도, 하천, 우수지시설, 방수설비, 방화설비, 철도, 궤도, 석도, 폐차장, 자동차 및 중기점사시설,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 공항의 계획수립 및 조정과 사도 개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재개발과) ①재개발과에 재개발행정제·재개발계획제·재개발사업1계 및 재개발사업2계를 두고, 재개발행정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개발계획제장·재개발사업1계장 및 재개발사업2계장은 지방도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재개발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개발행정제

가. 도심재개발사업기금의 운영관리(세입 및 세출, 위탁 및 융자, 기금의 관

리 등) 및 활용 계획

나. 재개발사업자격평가위원회 운영

다.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행정지원

라.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개발계획제

가. 도심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다. 구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도시설계 기법 기준에 관한 사항

라. 공공용지시설 기준 및 설치계획 수립

3. 재개발사업1계(한강 이북지역 중 세종로·태평로·남대문로 및 한강로의 서측과 한강 이남지역 중 한남대교 및 경부고속도로의 서측)

가.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 포함) 및 사업완료에 관한 사항

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마.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바. 도심재개발사업 지구내 건축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

사. 도심재개발사업 구역내 위험건물·축대·절개지 등 위험시설물에 관한 지도·감독

아. 특정가구 재정비에 관한 사항

4. 재개발사업2계(한강 이북지역 중 세종로·태평로·남대문로 및 한강로의 동측과 한강 이남지역 중 한남대교 및 경부고속도로의 동측)

가.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 포함) 및 사업완료에 관한 사항

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마.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바. 도심재개발사업 지구내 건축 기본 계획 수립 조정
 사. 도심재개발사업 구역내 위험건물·축대·절개지 등 위험시설물에 관한 지도·감독
 아. 특정가구 재정비에 관한 사항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공원과) ①공원과에 공원행정계·공원개발계 및 공원관리계를 두고, 공원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개발계장 및 공원관리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공원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행정계
 가. 공원개발·관리계획의 종합조정
 나. 공원관련 세출예산 및 세입금 관리 총괄
 다. 공원관련 법령·조례개정 및 질의회시
 라. 사업소 행정업무 지도·감독
 마. 공원재산관리
 바.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원개발계
 가. 공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결정
 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민자투자공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마. 국립공원 개발에 관한 사항
 바. 사업소 개발업무 지도·감독
 사. 공원조성과 관련된 타부서 협의 사항
 3. 공원관리계
 가. 공원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공원이용 활성화 대책수립
 다. 각종 공원대장과 통계의 관리 및 무료입장 조치
 라. 민자투자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립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업소관리업무 지도·감독
 사. 공원관리와 관련된 타부서 협의 사항
 아. 공원내 각종 시설물 정비계획의 수립조정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녹지과) ①녹지과에 녹지행정계·녹지보호계·조경기획계 및 조경관리계를 두고, 녹지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녹지보호계장·조경기획계장 및 조경관리계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녹지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행정계
 가. 국·공유 임야재산의 관리
 나. 임야 내의 행위 허가 및 협의
 다. 산림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라. 산림동원 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마. 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녹지보호계
 가.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및 관리 단속
 나. 임산물 유통 지도·단속
 다. 산림사범의 처리
 라.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의 건물·축대·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총괄
 마.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3. 조경기획계
 가. 도시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미관광장, 공공용지)에 관한 조성계획 수립
- 다. 조경시설(녹지대, 시설녹지, 동상·기념비, 분수 등)의 설치 조성
- 라. 사방, 조림 및 경관림 조성
- 마. 각종 조경사업의 조정, 통제 및 지도·감독

4. 조경관리제

- 가. 가로수식재계획 수립 및 관리
- 나. 조경시설(녹지대, 시설녹지, 동상·기념비, 분수 등)의 관리
- 다. 산림 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라.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 및 수렵지도
- 마. 화훼, 잔디, 수목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바. 녹지사업소 지도·감독

제49조 및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계획제”를 “주택사업제”로, “계장은”을 “각 계장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기획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행정계

- 가. 주택행정 종합조정
- 나. 주택건설 기본계획 수립
- 다.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라.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의 총괄 조정
- 마. 국민주택자금 기채 및 상환관리
- 바. 주택통계 관리
- 사. 국내 다른 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택사업계

- 가. 시건설주택 건설계획 수립
- 나. 시건설주택 건설에 따른 심사분석
- 다. 공공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협의
- 라.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업

무지침 수립

- 마.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업무 지도
- 바.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관한 사항

3. 임대보호계

- 가. 전(월)세입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수립
- 나. 전(월)세가적 안정대책 수립
- 다. 전·월세 용자금 지원
- 라. 임대주택 공급지침 및 입주자 선정 관리
- 마. 임대주택 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바. 주택상당실 운영(상당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주택관리계

- 가.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재산관리 처분
- 나.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조정·징수 및 체납처분
- 다. 시건설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및 공급 승인
- 라. 시건설분양주택 전매행위 등 관리
- 마. 시민아파트 정리 및 관리
- 바. 주택관리업자 면허 및 관리
- 사. 공공주택 관리주체 인가 및 관리
- 아. 공동주택 준공 후 관리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도시개발과) ①도시개발과에 관리계·택지개발계 및 한지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택지개발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한지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도시개발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

- 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예산 총괄
- 나. 택지개발사업토지 매각업무 총괄
- 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
- 라. 도시개발공사 지도·감독
- 마. 세입 및 현재, 일상 경비 총괄
- 바. 국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택지개발제
- 가.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정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라. 택지의 공급 승인
- 마. 기타 도시개발사업
3. 환지제
-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예산 총괄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분담금, 청산금 및 기타 징수금 과징
- 다.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평가 및 환지등기 촉탁
- 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분할 및 환지처분
-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통계, 동명의 개정요구 및 자변정리
- 바. 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사업시행 조장과 지도감독
- 제53조제2항제1호마목 중 “사유지수용 및 보상”을 “보상업무 지도·감독”으로 하고, 동항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조복
- 제54조를 삭제한다.
- 제57조제2항제1호 중 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도로상 각종 사고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
- 사. 도로 유지보수 통계자료 조사 및 관리
- 제57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도로시설물 통계자료 조사 및 관리
- 제58조 내지 제61조를 삭제한다.
- 제6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기획제
- 가.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 나. 단기·중장기 교통대책 수립
- 다.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 라. 교통행정제도 운영 개선
- 마. 교통방송본부 및 교통관리사업소 지도·감독
- 바. 국내 다른 과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62조제2항제2호에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의 총괄
- 마. 교통안전에 관련되는 업무 총괄
- 제6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하철도제
- 가. 지하철건설 및 지하철운영의 기본 종합계획 수립
- 나. 도시철도사업의 종합조정
- 다. 지하철 건설공사의 진도파악 및 조정
- 라. 도시철도공제 발행 및 상환업무 조정
- 마.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관리
- 바. 지하철건설본부 및 지하철공사 지도감독
- 제6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수행정제

가. 버스운수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 전세버스·장의버스 운송사업의 면허 및 인가

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라. 운수과징금 징수결의 및 부과징수(버스에 한함)

마.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바.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

사. 국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3조제2항제2호마목 중 “ 시내버스 정류소 ” 를 “ 시내·시외버스 정류소 ” 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제의외(타시도 노선 포함) 노선 조정협의

제63조제2항제3호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사항 전산입력 및 관리

제64조제2항제1호 중 다목을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도제

가. 과소관 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사항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나. 택시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선·해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 과소관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행정처분

라. 과소관 사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사고지수 관리

마. 과소관 사업용차량 등 환경개선 점검 및 조치

바. 과소관 교통사고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민방위과) ① 민방위과에 계획계·방

재계 및 편성계를 두고, 계획계장 및 편성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방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계

가. 민방위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나.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다.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조정

라. 병무업무 협조

마. 전시 민방위계획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바. 민방위피해 및 역점시책 종합평가

사. 민방공경보통제소 지도·감독

아. 국내 다른 과 및 국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방재계

가. 도시방재 종합대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나. 특수 취약지 추적관리 및 합동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다. 재해수습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라.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 및 도시방재실무위원회 운영

마. 도시방재 연구 및 지도·감독

바. 도시방재 종합상황실 운영

3. 편성계

가.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나. 민방위대원의 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다. 민방위대의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대 신고망 운영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마. 민방위대원 동원에 대한 응급조치

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바. 민방위대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제70조제1항 중 “화생방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을 “화생방계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가목 중 “교육
 훈련”을 “교육”으로 하며, 동호 사목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사.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제7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2. 민방공계

가. 민방위의날 훈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재난대비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군·관·민 합동훈련 계획수립 및 시
 행

라. 동화관제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마.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3. 화생방계

가. 화생방교육 및 방호계획 수립 시행

나. 화생방장비 물자확보 및 관리

다. 화생방 탐지·측정·제독 및 주민통
 제

라. 민방위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마. 민방위시설·장비 및 물자수급에 관
 한 사항

바. 민방위시설 준비명령 및 응급조치
 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사.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시설물 건
 급복구에 관한 관계부서 협조 및 조
 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3. 7. 16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570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차장) ①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
 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
 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본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부에 총무부·업무부·시설부·생산관리
 부 및 급수부를 둔다.

제3조제3항 중 “서무과·기획조정과·예산
 과”를 “총무과·기획예산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업무부에 과장과 경영관리과 및 경리과
 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별표〉 본부사무분장표의 총무부란 중
 “서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분장사무란
 중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카목(종전의 차목) 중 “다른 국·부·
 과”를 “다른 부·과”로 하고, 동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홍보, 보도 및 간행물에 관한 사항

동표 총무부의 기획조정과란을 다음과 같
 이 하고, 예산과란을 삭제한다.

총 무 부	기 획 예 산 과	가. 상수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상수도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다. 대의회, 정당 및 정책회의 업무 라. 고시, 공고 및 송무 총괄·법무심사(본청분 제외) 마. 자료수집 및 유지관리 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배정 사.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지침 수립 아. 차관 및 외채와 기채에 관한 사항 자. 기금 및 세입세출의현금사업 예산집행 및 관리 차. 전시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통계 카. 예산제도 연구개선 및 집행에 관한 지도
동표 업무부란 중 “경영과”를 “경영관리과”로 하고, 전산과란을 삭제하며, 경영관리과(중전의 경영과) 분장사무란의 바목 다음		에 사목 내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수도의 전산화 장·단기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아. 상수도의 전산화 추진과 전산기술개발 및 연구 자. 전산실 컴퓨터 및 부대관련시설 운영관리 차. 상수도 주요통계 종합조정 관리 및 조사 카.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및 총괄
동표 시설부의 시설계획과 분장사무란 중 사목 및 시설과 분장사무란 중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바. 상수도 재해대책·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총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조직제규칙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3. 7. 16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571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조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조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장 밑에 총무부·관리부”를 “사업소에 관리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부장 및 관리부장”을 “관리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보안 및 인사 2. 기획·행사·홍보 및 대의회 업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방안 강구
5. 공원이용 종합계획 수립
6. 하천법상 인·허가 업무
7. 수영장 운영
8. 지구사무소 지도감독 및 순찰
9. 기타 소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방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예방 및 대책
2. 저수로 정비 및 수자원 공급
3. 수질보존 및 한강생태계에 관한 보호 연구
4. 한강내 호안·사면지 및 수상청소
5. 유선·도선·선박에 관한 인·허가 및 운영지도·감독
6.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⑥ 시설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2. 하천 시설물의 설치공사
3. 고수부지내 공원시설 설치 및 녹지대 조성관리
4. 수상 안전지도 및 긴급구조

5. 긴급 도강시설의 운영관리 및 훈련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 및 지구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 ①관리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운영과·관리과 및 지구사무소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구사무소사무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방재부에 치수과·환경과 및 운항지도과를 두며, 치수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사무관으로, 운항지도과장은 지방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설부에 시설과·녹지와 및 안전과를 두며, 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과 및 지구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한강관리사업소 사무분장표

부 명	과 명	분 장 사 무
관 리 부	총 무 과	1. 문서·관인·보안 및 청중단속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3. 급여 및 직원후생 4. 청사·장비 및 차량의 유지관리 5. 행사 및 체육에 관한 사항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7. 계약회계 및 물품판리에 관한 사항 8. 세입 및 세출의 총괄 9. 기타 소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 획 예 산 과	1. 기본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방안 강구 3. 예산안의 편성 및 총괄조정

부 명	과 명	분 장 사 무
		4. 예산의 배정 및 재정합의에 관한 사항 5. 사정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 처리 6. 홍보·공보 및 대외회 업무 7. 기동순찰업무
	운 영 과	1. 공원이용 종합계획 수립 2. 미아·유실물 보호 및 보관 3.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수수료 징수 5. 스케이팅장의 설치 허가 6. 지구사무소 지도·감독 7. 토사의 불법매립 단속
	관 리 과	1. 하천의 무단점용 및 위법시설물 설치 단속 2.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단속 3. 오폐물투기 및 위생상 유해행위 단속 4. 행락질서유지 및 풍기정화 지도·선도 5. 고수부지내 공원사용료 징수 6. 지구내 간이매점 관리
	지 구 사 무 소	1. 하천시설 및 공원시설의 보호관리 2. 공원시설의 이용안내 및 사용료 징수 3. 관할 지역내 순찰 및 지도·단속 4. 시민신고센터 운영 5. 지구내 재해대책 강구 및 시행 6. 회계 및 물품관리 7. 기타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방 재 부	치 수 과	1. 수자원 조절 및 공급 2. 하상정비 및 저수로 준설 3. 토석 등 산출물의 채취허가 4. 공유수면 매립면허 5. 하천의 지목변경·등기 등 국유화 조치 6. 공용부담에 의한 손실보상 7.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계획 수립 8. 한강재해대책반의 설치 및 상황실 운영 9. 수방단의 조직 10.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출동협조 요구 11. 경계구역 설정 및 지장물 철거 12. 복구공사 동원명령 조치 13. 재해대장 작성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부 명	과 명	분 장 사 무
		14. 피난경고 및 경보시설 설치관리 15. 수위 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16.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과	1. 수질보호 및 개선계획과 대책수립 2. 하천오염의 조사분석 및 방지 3. 수산자원 보호·증식 및 방류 4. 수중 동·식물 및 조수의 조사연구 5. 한강 생태계에 관한 연구 및 자료관리 6. 내수면 어업허가 및 제한조치 7. 불법 어로 및 조수 수렵행위 단속 8.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호안·사면지 청소 및 수상부유오물 수거 10. 환경미화원 임용 및 작업관리 11.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12. 기타 한강내 호안·사면지 및 수상청소에 관한 사항
	운항지도과	1. 유선 및 도선업의 신고·인가 처리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3. 죽목의 운송 및 선박의 운항허가와 안전조치 4. 유선·도선 및 선박에 관한 지도·감독 5. 항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선박내 행락질서 지도·단속 7. 유선장의 설치 허가 및 점용료·수수료 징수 8. 무단 수상이용행위 지도·단속 9. 수상이용 및 수상공원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 수상이용 단체 및 협회 지도 11. 수상스포츠교실 운영관리 12. 시유 수상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3. 선박 등 이용시민의 안전대책 수립 14. 선박기지 운영관리 15. 관공선 건조·수리 및 관리
시설부	시설과	1.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2. 수중보 수문조작 및 유지관리 3. 수영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4. 접안시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지도·감독 5. 제방·호안 시설의 관리 및 공사 6. 고수부지내 진입로·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 7. 시설물의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8.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명	과 명	분 장 사 무
	녹 지 과	1. 고수부지내 채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2. 고수부지 초지조성 및 유지관리 3. 강변도로 사면지 및 녹지대 관리 4. 제방의 사방 및 녹지조성 5. 고수부지내 식물의 채식허가
	안 전 과	1. 수상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계통 2. 수상시설의 구난조치 및 인명 긴급구조 3. 긴급 도강시설·장비의 운영관리 4. 긴급 도강수단의 연구 및 개발 5. 도강교육 및 훈련 실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1993. 7. 16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572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의 총계
정원란 “1,880”을 “1,837”로,

4급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7”을 “7(서울
600년사업 추진요원1)”로,

5급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162”를 “163
(서울600년사업 추진요원4)”으로, 임업직
“5”를 “6”으로, “축산직1”을 삭제하고, “임
업직6” 다음에 “약무직1”을 신설하며, 행정
또는 전산직 “1”을 “3”으로, 행정 또는 임
업직 “3”을 “2”로, “행정 또는 전기직1” 다
음에 “행정 또는 농업직1”을 신설하고, 행
정 또는 별정직 “9”를 “8”로, “행정 또는
별정직8” 다음에 “행정 또는 의무직1”을
신설하며, “의무 또는 약무직1”을 삭제하
고, 토목 또는 건축직 “7”을 “6”으로, 행정
·토목 또는 건축직 “2”를 “1”로, “행정·농

업 또는 수산직2”를 삭제하며,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1” 다음에 “농업·수산 또는 축
산직1”을 신설하고,

6급정원란 “450”을 “467”로,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295”를 “308(서울600년사업 추
진요원7)”로, 전산직 “3”을 “5”로, 기계직
“13”을 “12”로, 임업직 “12”를 “13”으로,
하고, “간호직2” 다음에 “의료기술직1”을
신설하며, 건축직 “20”을 “19”로 하고, “행
정 또는 별정직(6급상당)4” 다음에 “행정
또는 토목직1(서울600년사업 추진요원), 행
정 또는 건축직1(서울600년사업 추진요
원)”을 신설하며,

7급정원란 “551”을 “533”으로, 정원내용
란 중 행정직 “376”을 “363(서울600년사업
추가요원8)”으로, 전산직 “9”를 “11”로, 사
서직 “3”을 “2”로, 전기직 “13”을 “10”으
로, 임업직 “8”을 “7”로, 환경직 “2”를 “3”
으로, 건축직 “15”를 “14”로, 지적직 “15”
를 “13”으로 하며,

8급정원란 “49”를 “46”으로,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32”를 “30”으로 하고, “기계직
1”을 삭제하며,

9급정원란 “16”을 “15”로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14”를 “12”로 전산직 “1”을 “2”로
하고,

별정직 정원란 "66"을 "61"로, 정원내용란 중 5급상당 "3"을 "2"로 하고, "화생방계장1"을 삭제하며,

6급상당 "26"을 "25"로, 자료분석요원 "4"를 "2"로 자료조사원 "1"을 "2"로,

7급상당 "34"를 "33"으로, 판독사 "3"을 "2"로, 자료조사원 "2"를 "1"로 하고, "자료조사원1" 다음에 "속기요원1"을 신설하며,

8급상당 "3"을 "1"로, 영화기사 "3"을 "1"로 하며,

기능직정원란 "476"을 "443"으로, 정원내용란 중

8등급 "23"을 "22"로, 위생원 "3(위생1, 사역2)"를 "2(사역2)"로 하고,

9등급 "127"를 "125"로, 위생원 "26(위생2, 사역24)"을 "24(사역24)"로 하며, 사무보조원의 "28(타자21, 필기7)"을 "28(타자22, 필기6)"로 하고,

10등급 "315"를 "285"로 교환원 "6"을 "4"로, 운전원 "79"를 "59"로, 위생원 "75(위생4, 사역71)"을 "71(사역71)"로, 사무보조원 "95(타자67, 필기27, 제리1)"을 "91(타자64(서울600년사업 추진요원2), 필기26(서울600년사업 추진요원), 제리1)"로 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란 "72"를 "71"로,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48"을 "47"로, 운전원 "8"을 "7"로 하고, 합계정원란 "99"를 "98"로 한다.

〈별표 2-3〉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사업본부의

2·3급정원란 "2"를 "1"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1"을 삭제하며, "공업 또는 시설직1"을 "행정·공업 또는 시설직1"로 하고,

5급정원란 "17"을 "15"로 하고, 정원내용

란 중 기업행정직 "7"을 "6"으로 하며, "기업행정 또는 전산직1"을 삭제하고,

6급정원란 "48"을 "47"로 하며, 정원내용란 중 기업행정 또는 전산직 "2"를 "1"로 하고,

7급정원란 "47"을 "45"로 하며, 정원내용란 중 건축직 "2"를 "1"로, 기업행정 또는 전산직 "4"를 "3"으로 하고,

8급정원란 "37"을 "29"로 하며, 정원내용란 중 기업행정직 "22"를 "18"로, 화공직 "2"를 "1"로, 수도토목직 "4"를 "3"으로 하며, "기업행정 또는 전산직2"를 삭제하고, 계 정원란 "201"을 "187"로 하고,

마. 수도자재사업소의 기능직정원란 "57"을 "55"로,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32"를 "30"으로, 기계원 "9"를 "7"로 하고, 계 정원란 "79"를 "77"로 한다.

〈별표 2-4〉 서울시설대학교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란 "77"을 "76"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42"를 "41"로 하며, "전산원1"을 삭제하고, 합계정원란 "161"을 "160"으로 한다.

〈별표 2-5〉 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8급정원란 "34"를 "33"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12"를 "11"로 하며,

기능직정원란 "14"를 "13"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9"를 "8"로, "사무보조원1(타자1)"을 삭제하며, 합계정원란 "112"를 "112"로 한다.

〈별표 2-6〉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란 "323"을 "282"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9등급 "99"를 "98"로, 조무원 "20(조무5, 집배1, 검수표14)"를 "19(조무5, 검수표14)"로, 10등급 "190"을 "148"로, 통신원 "12"를 "7"로, 전기원 "20"을 "15"로, 조무원 "51(조무13, 집배2, 검수표36)"을 "36(조무11, 검수표25)"로, 방호원 "32"를 "15"로 하며, 합계

정원란 "412"를 "369"로 한다.

〈별표 2-7〉 보건환경연구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별정직정원란 "45"를 "43"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7급상당 "15"를 "13"으로, 공해측정기사 "15"를 "13"으로 하며, 기능직정원란 "36"을 "35"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9등급 "8"을 "7"로, "사육원1"을 삭제하며, 합계정원란 "271"을 "268"로 한다.

〈별표 2-8〉 시립병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3급정원란 "5"를 "4"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의무직 "5"를 "4"로 하며,

5급정원란 "15"를 "12"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5"를 "4"로 하고, 약무직 "5"를 "4"로, 간호직 "5"를 "4"로 하며,

6급정원란 "79"를 "62"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10"을 "8"로, 약무직 "11"을 "8"로, 간호직 "50"을 "40"으로, 의료기술직 "8"을 "6"으로 하며,

7급정원란 "12"을 "102"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12"를 "10"으로, 약무직 "12"를 "10"으로, 간호직 "88"을 "72"로, 의료기술직 "12"를 "10"으로 하며,

8급정원란 "224"를 "191"로 하고, 행정직 "23"을 "17"로, 간호직 "191"을 "167"로, 의료기술직 "10"을 "7"로 하며,

9급정원란 "39"를 "28"로 하고, 행정직 "10"을 "7"로, 의료기술직 "29"를 "21"로 하며,

별정직정원란 "24"를 "21"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7급상당 "22"를 "19"로, 영양사 "5"를 "4"로, 고압가스관리기사 "5"를 "4"로, 의료기기수리기사 "3"을 "2"로 하며,

기능직정원란 "328"을 "280"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7등급 "10"을 "8"로, 전기장 "5"를 "4"로, 기계장 "5"를 "4"로 하며,

8등급 "9"를 "8"로, "간호조무원1"을 삭제하고,

9등급 "92"를 "87"로, 간호조무원 "3"을 "2"로, 사무보조원 "8(타자1, 필기7)"을 "4(타자1, 필기3)"로 하며,

10등급 "217"을 "177"로, 건축원 "3"을 "1"로, 교환원 "7"을 "3"으로, 전기원 "5"를 "3"으로, 기계원 "13(기계13)"을 "10(기계10)"으로, 운전원 "11"을 "9"로, 위생원 "82(위생7, 사역75)"를 "81(위생6, 사역75)"로, 간호조무원 "6"을 "3"으로, 사무보조원 "28(타자4, 필기10)"을 "13(타자3, 필기10)"으로, 조무원 "39(조무34, 집배5)"를 "34(조무30, 집배4)"로, 방호원 "21"을 "18"로 하고,

합계정원 "838"을 "700"으로 한다.

〈별표 2-9〉 청소년직업훈련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별정직정원란 "31"을 "30"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7급상당 "20"을 "19"로, "영사조정기사1"을 삭제하며, 기능직정원란 "26"을 "25"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14"를 "13"으로, 운전원 "2"를 "1"로 하며, 합계정원란 "75"를 "73"으로 한다.

〈별표 2-10〉 근로자후생시설지방공무원정원표 나. 부녀복지관의 별정직정원란 "57"을 "56"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8급상당 "30"을 "29"로, 훈련교사 "25"를 "24"로 하며, 기능직정원란 "54"를 "53"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38"을 "37"로, 조무원 "5(조무2, 집배3)"을 "4(조무1, 집배3)"으로 하며, 합계정원란 "133"을 "131"로 하며,

다.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직정원란 "49"를 "47"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32"를 "30"으로, 기계원 "5(기계5)"를 "4(기계4)"로, 위생원 "12(위생6, 사역6)"를 "11(위생6, 사역5)"로 하며, 합계정원란 "92"를 "90"으로 한다.

〈별표 2-12〉 부녀보호소지방공무원정원

표의 기능직정원란 "15"를 "14"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10"을 "9"로, 위생원 "3(사역3)"을 "2(사역2)"로 하며, 합계정원란 "23"을 "22"로 한다.

〈별표 2-16〉 세종문화회관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란 "188"을 "171"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109"를 "92"로, 건축원 "9"를 "8"로, 통신원 "4"를 "3"으로, 전기원 "20"을 "19"로, 기계원 "16(기계16)"을 "13(기계13)"으로, 위생원 "9(사역9)"를 "5(사역5)"로, 조무원 "31(검수표 31)"을 "26(검수표26)"으로, 방호원 "15"를 "13"으로 하며, 합계정원란 "239"를 "222"로 한다.

〈별표 2-17〉 종합건설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 공사본부의 6급정원내용란 중 기계직 "4"를 "5"로 하고, "화공직1"을 삭제하며, 7급정원내용란 중 기계직 "5"를 "6"으로 하고, "화공직1"을 삭제하며,

기능직정원란 "28"을 "25"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20"을 "17"로, 운전원 "7"을 "4"로 하며, 합계정원란 "261"을 "258"로 한다.

〈별표 2-20〉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사업본부의 기능직정원란 "29"를 "28"로,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25"를 "24"로 운전원 "5"를 "4"로 하며, 합계정원란 "170"을 "169"로 한다.

나. 난지도관리사업소의 7급정원란 "5"를 "4"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3"을 "2"로 하며,

8급정원란 "10"을 "9"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4"를 "3"으로 하며,

9급정원란 "13"을 "11"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4"를 "3"으로, 기계직 "2"를 "1"로 하며,

기능직정원란 "67"을 "52"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9등급 "17"을 "10"으로, "토목원

1, 전기원1"을 각각 삭제하며, 기계원 "8(기계8)"을 "3(기계3)"으로 하고, 10등급 "19"를 "11"로, 토목원 "2"를 "1"로 하며, "전기원1, 기계원3(기계3)" 및 "위생원2(위생1, 사역1)" 각각 삭제하고, 사무보조원 "2(필기2)"를 "1(필기1)"로 하며, 합계정원란 "103"을 "84"로 한다.

〈별표 2-23〉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란 "202"를 "200"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115"를 "113"으로, 운전원 "10"을 "8"로 하며, 합계정원란 "313"을 "311"로 한다.

〈별표 2-24〉 치하철건설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란 "39"를 "36"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31"을 "28"로, 운전원 "12"를 "9"로 하며, 합계정원란 "553"을 "550"으로 한다.

〈별표 2-26〉 차량정비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기능직정원란 "183"을 "168"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43"을 "28"로, 기계원 "30(기계30)"을 "15(기계15)"로 하며, 합계정원란 "201"을 "186"으로 한다.

〈별표 2-29〉 한강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4급정원란 "4"를 "3"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2"를 "1"로 하며, 5급정원란 "15"를 "10"으로 하고, 정원내용란 중 행정직 "6"을 "4"로, 임업직 "2"를 "1"로, 토목직 "3"을 "2"로 하며, "행정 또는 선박직1"을 삭제하고, 기능직정원란 "92"를 "80"으로, 정원내용란 중 9등급 "29"를 "27"로, 농림원 "7(원예7)"을 "5(원예5)"로 하며, 10등급 "46"을 "36"으로, 운전원 "10"을 "8"로, 사무보조원3 "(타자3)"을 "(타자2, 필기1)"로, 조무원 "1(집배1)"을 "2(집배2)"로, 방호원 "15"를 "6"으로 하고, 합계정원란 "226"을 "208"로 한다.

〈별표 2-30〉 하수도처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중량하수처리사업소의 기능직

정원란 "356"을 "341"로,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151"을 "136"으로, 전기원 "22"를 "7"로, 계 정원란 "428"을 "413"으로 하고,

나.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기능직정원란 "154"를 "153"으로,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54"를 "53"으로, 운전원 "4"를 "3"으로, 계 정원란 "206"을 "205"로 하며,

다. 가양하수처리사업소의 기능직정원란 "131"을 "127"로,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50"을 "46"으로, 조무원 "11(조무11)"을 "7(조무7)"로 하며, 계 정원란 "165"를 "161"로 하고

라.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기능직정원란 "100"을 "97"로,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33"을 "30"으로, 위생원 "5(사역5)"를 "2(사역2)"로 하고, 계 정원란 "130"을 "127"로 한다.

부 칙

① (시정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